
송도컨벤시아 주차장 운영 지침



송도컨벤시아 주차장 운영 지침

2024년 4월 25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송도컨벤시아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란 송도컨벤시아 주차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주차관리업체”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송도컨벤시아 주차장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협력업체”란 공사 또는 민자시설 사업주와 직접 계약하여 송도컨벤시아 시설을 운영관리 하거나 연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하도급업체 포함)를 말한다.
4. “입주업체”란 공사 또는 민자시설 사업주와 직접 계약하여 송도컨벤시아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5. “일반주차”란 행사참관객, 내방객 등이 한시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정기주차”란 운영자 또는 주차관리업체가 사전 승인한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주차권”이란 주차요금에 갈음하여 지불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가. 시간권: 일반주차한 차량이 입차한 시간부터 해당 시간만큼 이용 가능하며 1회로 입출차가 제한되는 주차권
 - 나. 정기권: 일정기간 동안 시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입출차 할 수 있는 주차권
8. “업무용 차량”이란 해당 기관 및 법인 명의로 등록 또는 임차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출입하는 운영자, 주차관리업체, 입주업체, 임직원, 내방객 등 주차장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주차장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의 구분) 주차장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자동차의 구분)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자가 정한 별표 2와 같다.

제6조(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전반에 관한 계획, 조정, 통제 및 확인에 대한 감독
2. 주차장 내 시설, 기물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감독
3. 주차관리업체의 근무상태에 대한 감독
4. 주차요금의 계산, 기장, 배분 및 기타 정산에 관한 사항의 감독

제7조(주차관리업체의 의무) 주차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출입차량의 질서유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2. 부당한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차시설 등 공동재산을 보호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 주차장별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상주차장 및 하역장: 24시간
2. 지하주차장: 08시 ~ 익일 02시

제9조(주차시간의 계산) ① 주차요금 산출을 위한 주차시간은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 시간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 인식 시간까지로 하며, 사전정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산시점까지로 한다.

② 사전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산한 경우 정산 후부터 출차 시까지 30분의 여유시간(Grace time)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차장 내 혼잡으로 최종 주차정산소 통과시간이 30분을 초과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③ 회차 차량은 30분 이내 출차 시 요금을 면제해 주고, 30분 초과 시에는 최초 입차시간부터 계산하여 정상 요금을 부과한다.

제10조(일반주차 요금) ① 일반주차 요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쇼, 공연 등의 관람객 인파로 주차장 출입이 매우 혼잡하거나 또는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지휘 하에 주차요금 징수 및 출입방법 등을 임시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은 카드(신용카드, 모바일카드, 하이패스, T-머니 등)로 결제한다.

④ 설, 추석 등 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명절 기간에는 관리비용 절감, 지역주민 무료이용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무료 개방할 수 있다.

⑤ 주차장 이용객이 카드의 부재 등 결제수단이 없어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지정한 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완료한 후에 출차할 수 있다.

제11조(시간권의 요금 및 환불) ① 시간권의 요금 및 환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간권 요금의 징수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정기주차 등록) ① 정기주차 희망자의 신청(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하여 운영자 및 주차관리업체가 정기권을 등록한다. 단, 주차장 수용능력 또는 전시회 등의 개최에 따른 주차장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한시적으로 정기권 등록차량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기권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1년까지 등록할 수 있다. 단, 행사차량의 경우 3일 이상 사전 결제 시 등록이 가능하며, 공사, 송도컨벤시아, 협력업체 등의 업무용 차량 및 직원 차량의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정기권 등록 구비서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정기권 발급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2. 재직증명서
3. 차량등록증(가족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에 한하며, 임차 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포함)
4. 최초로 등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추가한다.
5. 추가로 증빙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정기권 등록 사용자는 차량 및 신상정보 변경 시 운영자 또는 주차관리업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차량변경 시 : 변경된 차량등록증 사본(임차 차량일 경우 임차계약서 포함)
2. 소속변경 등 신상정보의 변경 시 : 변경된 재직증명서(단, 신규업체일 경우 업체등록서류 제출)

⑤ 공사·협력업체·입주업체 등의 차량 등록 변경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자는 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체신청서로 일괄 요청할 수 있다. 공사·협력업체·입주업체는 퇴사·전출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운영자 및 주차관리업체에게 구두통보 후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기관·회사별로 신규 정기주차권 발급을 1개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권 요금 및 환불) ① 정기권의 요금 및 환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권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정기권 요금의 징수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기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월 기준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주차장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하며, 7일 이내 환불하는 경우의 환불금액은 사용일수 만큼 일반요금을 적용하여 공제한 잔여금액으로 한다.

④ 사용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⑤ 제12조 제5항에 따라 무료정기권 차량 및 사용자의 신상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 및 주차관리업체에게 통보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재발급 전까지의 이용기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정기권 연장) ① 정기권 연장 접수 시 운영업체는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최초 발급 신청 시와 동일하게 징구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단체연장신청서상 대표인의 확인으로 재직관련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정기권 연장은 사용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정기권 연장 시에는 초과된 주차장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부터 정기권이 다시 연장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요금을 부과한다.

제15조(주차장 임대요금) 행사, 지정주차 및 촬영 등을 위하여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수 있다. 주차장 임대 요금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주차요금의 할인 및 면제) 주차요금의 할인가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주차요금의 면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주차요금의 조정) 주차장의 제반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차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제1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관리업체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2. 주차장 내에서는 표시 또는 신호에 따라 천천히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3. 주차장에 표시된 1개의 주차구역에만 주차하여야 한다.
4. 차량 내에는 귀중품 등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난예방을 위하여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주차장 내에서는 일체 경음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주차장 내 시설, 기물, 차량 또는 인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 수리나 긴급 급유는 예외로 한다.
8.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주차장 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험물 또는 「악취방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정악취물질 등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대·소형 주차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기타 차량소통 및 주차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주차위치 및 주차 제한) 운영자 또는 주차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금지, 주차위치 변경 등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2.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3. 정기주차권을 승인받은 경우라도 전시장 이용객 등의 일시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보상 없이 한시적으로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4. 관리자는 주차장의 보수 등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체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5. 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위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전시물 장치업체의 화물차량, 참관객의 관광버스 등 전시장 이용과 직접적 관련 있는 대형차량이 주차를 원할 경우 주차장 내·외에 별도의 임시구역을 정하여 우선적으로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입·출차 거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차 및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4. 관리상 지장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제21조(신고 및 응급조치)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자나 주차관리업체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발견하였을 때
 2. 주차장의 시설, 기물, 공용사용물 또는 차량을 훼손, 오손하였을 때 또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 ② 운영자는 제1항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차장 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무단방치차량의 처리) ① 주차관리업체는 주차장 내 야간잔류차량 파악을 통해 1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주의 전화번호를 파악(가능한 경우에 한함)하여 3회 이상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연락이 불가하여 차량 소유자의 출차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주차요금 정산에 의한 출차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하여 관할관청에 의한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이동시킬 수 있다.

제23조(사고처리 및 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주차장 내 시설, 기물 또는 공용사용 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인명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용자는 그 피해 또는 손해를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주차장 내에서 가해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다.

③ 주차장 내에서 가해자 불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가입한 보험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CCTV 및 입출차 사면카메라 식별이 안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차량운전자 본인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를 제출하면 보험 처리
2. 사고 조사를 위하여 주차장 내부의 CCTV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공사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 하여금 공사에 문서로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손해배상액 산정은 사고 발생 시의 시가를 한도액으로 하여 수리비(수리가능한 경우) 또는 시가(수리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의한다.

제24조(면책)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운영자는 아무런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의 적재물 또는 부착물이 도난, 화재, 멸실, 훼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운영자 또는 주차관리업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물품의 도난이나 차량 멸실·훼손
3. 천재지변, 폭동, 전쟁 등의 발생이나 법령에 의한 명령, 강제집행 등 사실상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의 손실, 훼손, 이용자의 신체상 손해

제25조(주차장 시설물 관리) 주차장 내 각종 시설물(교통표지, 안내시설, 장비 등)은 주차관리업체의 책임으로 관리·운영하되 시설물의 훼손, 망실,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해석)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적용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경우 주차관제시스템 재구축 이후에 적용한다.

【별표 1】 주차장의 구분(제4조 관련)

구분	주차면수	비고
지하주차장	802면	
지상주차장	355면	
하역장	-	주차구획 이외의 공간 주차 시 최대 약 240대 가능
계	1,157면	

【별표 2】 자동차의 구분(제5조 관련)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 물 자 동 차	자동차 관리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고속도로 차종분류	-	2.5톤 미만	2.5톤 이상 5.5톤 이하	5.5톤 초과 10톤 미만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최고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25cc 이하(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25cc 초과 260cc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것

【별표 3】 일반주차 요금기준(제10조 관련)

구분	지상·지하 주차장	하역장
허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 승합차(경형, 소형) • 화물차(경형, 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합차(중·대형) • 화물차(중·대형)
최초 30분	1,000원	2,000원
원/초과분당	1,000원/30분	2,000원/30분
일 최대요금	10,000원	20,000원

【별표 4】 시간권 요금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기준		비고
	지상·지하 주차장	하역장	
1시간권	2,000원	4,000원	[판매기준] • 대상: 일반 고객, 주최자, 참가업체, 입주업체 • 주최자, 참가업체: 20% 할인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지참 • 입주업체: 40% 할인 [환불기준] • 사용 잔여량에 대해 전액 환불 가능
2시간권	4,000원	8,000원	
3시간권	6,000원	12,000원	
4시간권	8,000원	16,000원	
1일권	10,000원	20,000원	

※ 해당 시간 초과 이후에는 일반주차 요금 적용

※ 지상·지하주차장 및 하역장 장소별 구매 주차권과 상이한 장소에 주차할 경우 차액 발생

【별표 5】 정기권 요금기준(제13조 관련)

구분	요금기준		비고
	지상·지하 주차장	하역장	
월 정기권	100,000원	정기주차 불가	<p>[판매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일반 고객, 입주업체 • 입주업체: 40% 할인 <p>[환불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간이 도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일이 초과된 경우) 환불 불가 - (7일 이내) [일반주차 요금 적용 잔여금액] • 사용기간 도래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환불 가능
일 정기권	10,000원/일	20,000원/일	<p>[판매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주최자, 참가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고객 판매 불가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지참 • 주최자, 참가업체: 20% 할인 • 1일 이상 사전 결제 시 등록 가능 <p>[환불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불 불가

※ 지상·지하주차장 및 하역장 장소별 구매 주차권과 상이한 장소에 주차할 경우 차액 발생

【별표 6】 주차장 임대 요금기준(제15조 관련)

구분	세부내역	비고
산정기준	단위요금 × 주차면수 × 임대일수 × 할인율	
단위요금	해당 주차장의 일 최대요금의 2배	• 일 회전률 및 주차민원 등을 고려하여 일 최대요금 2배 부과
주차면수	지하주차장 : 802면 지상주차장 : 355면 하역장 : 240면	• 특정 구역 분할 임대 가능
할인율	20% 할인	• 행사차량
	40% 할인	• 입주업체 차량

【별표 7】 주차요금 할인기준(제16조 제1항 관련)

구분	대상차량	할인기준
경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할인
전기차 충전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시간 무료
저공해 차량 (친환경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한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할인 단, 전기차를 충전한 경우 1시간 할인과 50% 할인 중 할인금액 높은 항목 적용
장애인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할인
국가유공자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보훈부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상자(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동 지침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할인
화물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역장 입차 차량 중 차량번호 80번대, 90번대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시간 무료
송도컨벤시아 사업단 방문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시간 무료
협력업체 및 입주업체 방문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시간 무료

- ※ 상기 할인기준은 일반주차 요금에만 적용되며, 시간권 및 정기권에는 미적용
- ※ 2개 이상의 할인기준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할인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
- ※ 협력업체 및 입주업체 방문차량 할인기준은 월 한도를 적용할 수 있음

【별표 8】 주차요금 면제기준(제16조 제2항 관련)

구분		세부내용
송도컨벤시아 사업단 차량		• 송도컨벤시아 사업단 업무용 차량 및 직원 차량 정기권 등록
송도컨벤시아 협력업체 차량		• 송도컨벤시아 협력업체 업무용 차량 및 직원 차량 정기권 등록
공사 본사 차량		• 공사 업무용 차량 및 임원·실단장 차량 정기권 등록
공무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및 군 작전용 차량, 구급·구호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정기권 등록 •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호용 등의 자동차, 군용특수자동차, 대테러용등의 자동차와 같은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정기권 등록
임대	전시홀	• 임대기간 10대/홀 정기권 등록 (시간권으로 교체 가능)
	컨벤션홀	• 임대기간 5대/홀 정기권 등록 (시간권으로 교체 가능)
	회의실	• 임대기간 2대/실 정기권 등록 (시간권으로 교체 가능)
	주차장	• 임대기간 해당 주차면수 대수 정기권 등록 (시간권으로 교체 가능)
연회	연회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런티 인원의 50% 4시간권 지급 • 단, 결혼식의 경우 혼주차량 10대(신랑·신부 각 5대) 1일권 지급
입주업체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면적 100㎡ 미만: 임대기간 1대 정기권 등록 • 임대면적 100㎡ 이상 330㎡ 미만: 임대기간 2대 정기권 등록 • 임대면적 330㎡ 이상: 임대기간 2대 + 330㎡당 1대 추가 정기권 등록
전시용 차량		• 전시용으로 설치되는 차량 장치 시작일부터 철거 종료일까지 정기권 등록
시설물 유지관리 차량		• 정기적인 위탁관리 또는 점검·보수공사 기간 정기권 등록
기타 차량		• 기타 공익목적 또는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전에 승인한 차량 정기권 등록